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한지아 · 박성훈 · 배준영  
김기현 · 김재섭 · 조지연  
이상휘 · 고동진 · 김 건  
조은희 · 강대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하고 있으나,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.

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,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).



법률 제 호

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은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</p> <p>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</p> <p>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은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로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